

의안번호	2211162
의 퇴 인	모경종의원
회 답 일	2025.8.14.
추계번호	25D3500
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설치 등)	-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함(현 서구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에 편입)	의무규정
2	안 제3조(재정지원에 대한 특례)	-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, 보조금·지방교부세, 재정투·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설치 등)	미대상: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‘행정체제개편추진단’을 임시조직으로 설치하여 행정체제 개편 사업을 진행 중으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비용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참고자료]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소요비용
2	안 제3조(재정지원에 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재정지원에 대한 특례(안 제3조)

- 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, 보조금·지방교부세, 재정 투·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보조금 등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

[참고자료]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소요비용

(단위: 억원)

구 분	총 계	‘25	‘26	‘27	‘28	‘29	‘30	‘31	‘32~
합 계	4,651	327	309	175	237	1,048	944	112	1,499
출범 전	831	322	306	61	61	61	20	—	—
임시청사 임차료	436	172	61	61	61	61	20	—	—
정보통신	234	150	84	—	—	—	—	—	—
공부·공인 정비 등 기타	161	—	161	—	—	—	—	—	—
신청사 건립	3,673	5	3	93	113	924	924	112	1,499
제물포구	1,389	1	1	—	—	—	—	—	1,387
영종구	1,002	2	1	42	47	408	408	47	47
검단구	1,282	2	1	51	66	516	516	65	65
보건소(검단) 건립	147	—	—	21	63	63	—	—	—

주: 1. 「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 2026.7.1.

2. 설치되는 3개 구 모두 신청사 건립을 가정한 소요비용으로 제물포구 신청사는 기존 시설 활용 방안 선행 가능

3. 영종구, 제물포구 보건소는 기존 시설 활용 방안 선행 후 신설 검토 예정

자료: 인천광역시 제출